



# 특석법 폐지 후의 일본석유업계 전망

이 자료는 내년 3월말 特石法 폐지를 앞두고 최근 日本의 전국석유상업조합연합회가 마련한 보고서를 읊긴 것이다(편집자註)

## 1. 日本의 석유제품수급에 미치는 영향

### (1) 전망

특석법폐지를 계기로 상사, 전농, 일부유통업자 등 여러 신규수입주체의 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신규 수입주체에 의한 제품수입량은 내수의 몇% 정도에 그쳐 일본 국내의 수급관계를 일변시킬 가능성은 적다. 또, 신규수입주체에 의한 제품수입은 환발유수입이 주가되고 등유의 수입은 적을 것이다.

게다가 신규수입주체에 의한 제품수입국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2개국이 유력하다. 특히 한국은 對일본 수출국으로서 가장 유력시되고 있어 특석법 폐지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공급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 (2) 판매업계의 대응방향

신규수입주체에 의해 석유제품이 수입되더라도 수입량은 내수의 몇% 정도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본 국내제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지역수급수준에서는 환발유의 공급과잉경향이 강해질 우려도 있다.

그래서 판매업계는 당분간 특석법 폐지를 계기로

지역수급의 향후 변화 주시와 함께 이와 관계된 각 방면에 대한 다음 사항의 요청이 필요하다.

#### ① 요망사항

(a) 對통상성 : ④ 1994년 이후의 석유공급계획 설정때 「제품수입」과 「국내생산」과의 조정에 만전을 기할 것. 특히 지역의 수급균형 유지도 충분히 고려할 것. ⑤ 수급조정 차원에서 석유제품의 수출촉진에 관계된 환경정비에 주력할 것.

(b) 對정유·원매회사 : ④ 자사계열의 판매능력, 실제수요에 따른 적정생산에 힘쓸 것. 또 예전의 거래상대가 신규수입 주체로서 제품수입을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거래량에 상응하는 양을 자체적으로 감산할 것. ⑤ 국내주유소부문에 대한 과잉·중복투자를 자제하고 제품수출기지 정비,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력 증대에 힘쓸 것.

## 2. 日本国내 석유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 (1) 전망

특석법폐지의 최대목적은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

를 통해 「휘발유가격만 월등히 높은」 현행가격을 시정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정부의 정책하에 특석법폐지 후 최종적으로 국내의 석유제품가격, 특히 휘발유가격(원매회사 도매가격, 소매가격)이 국제가격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 단계에서 특석법폐지후의 제품수입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업계관계자의 휘발유가격 산정에서는 현시점에서의 싱가포르 시장가격 혹은 한국의 정유공장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운임, 석유제세, 비축비용 등의 제경비를 가산하면 1㎘ 당 대강 80엔 전후의 가격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제품수입가격과 원매각사의 표준적 판매가격과 상당한 격차가 생길 것은 거의 확실하다.

수입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의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개개의 판매전략이나 기업체질의 차이도 있어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일반시세와 비교해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수입제품의 양은 내수의 몇% 정도에 그칠 전망이고 유통될 지역도 당분간 한정될 것이다. 그래서 특석법 폐지후 곧바로 전국적으로 가격파괴 현상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

## (2) 판매업계의 대응방향

판매업계의 대응으로서 다음 4가지에 대한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원매회사의 판매가격 「월정방식」재고이다. 현행방식은 원매회사 통고가격과 실제시세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게다가 특석법 폐지후는 신규수입주체가 공급하는 「수입제품가격」과 정제·원매회사의 「도매가격」이 국내도매시장에서 경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휘발유의 마진축소로 인해 판매업자가 손해보는 일어 없도록 정제·원매회사와 판매업자 양자간의 협의를 기초로 시장환경변화에 대응가능한 새로운 판매가격결정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사후조정등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의 시정 등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휘발유판매비용 절감, 효율화 노력이다. 규제 완화하에서 향후 다종다양한 업자의 신규참입이 예상된다. 도매 단계에서의 정제·원매회사와 신규수입 주체의 코스트경쟁뿐만 아니라 소매와 단계에서도 치열한 코스트경쟁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업계로서는 이 업종의 참입등에 의한 「가격파괴」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부단한 비용절감에 힘써야 한다. 이와 관련해 판촉을 위한 지나친 경품제공판매나 이벤트 개최에 대해 원매각사의 반성이 요구된다.

셋째, 자체적인 경비절감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 유지에 필요한 비용부담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는 등유나 경유등의 중간유분 판매의 적정수익 확보이다.

## 3. 수퍼마켓등 타업종의 신규참입

### (1) 전망

대규모 수퍼마켓 등 타업종의 제품수입을 포함해 언제 어떤 형태로 휘발유판매를 개시하는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규제완화에 따라 조만간 신규참입이 행해질 가능성은 높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수퍼마켓 각사는 프랑스의 하이퍼마켓 성공사례등 휘발유판매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의 휘발유 거래개시는 당연하다. 단, 대규모수퍼마켓 각사가 본격적으로 휘발유시장에 참입하는데는 몇가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셀프주유소의 해제가 본격적 참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 (2) 판매업계의 대응방향

대규모 수퍼마켓 등 이업종의 신규참입이 행해질 경우는 주변 주유소업자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자유화의 시대적 상황하에

서 신규참입자체를 인위적으로 억제·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매업계의 대응으로서 철저한 비용절감에 노력해 자체판매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기초로 필요에 따라 다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대응조치〉

① 대규모 수퍼마켓등이 고객유치를 위한 중심상품으로서 휘발유의 극단적인 인하판매를 단행할 경우는 1991년 3월에 통산성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에 의해 유형화된 「부당경매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행위중 『휘발유 소매 이외에 상당규모의 다른 사업을 하고 그것에 의해 얻은 이익을 휘발유 소매사업에 투입함으로써 휘발유를 총판매 원가를 밀도는 가격으로 계속 경매할 우려가 있다』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자세를 취할 것 또 조합조직 차원에서는 부당경매 신고에 대해 「조사시간이 너무 걸린다」, 「조사결과 회답의 애매함」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당경매신고제도의 운용개선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② 극단적인 인하판매의 배경에 합당한 근거가 결여된 판매가격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공급자에 대한 판매가격의 평준화·공평화를 요구할 것. 또 주유소의 셀프화는 소방당국이 1997년에 그 일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셀프주유소의 해제는 대규모 수퍼마켓등에 의한 휘발유판매의 본격적인 참입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같은 정세를 기초로 판매업계로서는 소방당국의 셀프주유소의 안전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함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경영면, 가격면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깊이 연구, 검토 해야 한다.

## 4. 유통구조의 개편

### (1) 전망

특석법 폐지후의 국내시장은 정제·원매회사로부

터 특약점, 판매점으로 통하는 기존의 유통경로와는 별도로 신규수입주체(제1차공급자)와 그 수입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당분간 제품수입량이 내수의 몇%정도에 그치고 또 수입품이 유통되는 지역도 특정지역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신·구 두가지 유통 경로가 전국적 규모로 경쟁하는 사태가 즉시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입제품의 판로 개척·확대를 꾀하는 신규수입주체가 기존 특약점이나 판매점에 대해 여러 「공세」를 취할 것은 확실하다. 그 결과 기존 유통경로의 효율성·유효성, 바꿔 말하면 원매회사 혹은 특약점의 존재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다.

### (2) 판매업계의 대응방향

가장 큰 과제는 정제·원매회사와 판매업자와의 대등한 거래관계 확립이다. 현재의 회사소유 대형주유소 건설에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났듯이 특석법폐지를 겨냥한 정제·원매회사의 대응으로 인해 각자의 「생존」에만 급급해 자칫하면 계열 판매업자의 존재가 무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판매업계는 원매회사와 호혜원칙에 기초한 대등한 거래관계 확립에 힘써야 한다. 판매업자에게 있어 신규수입주체의 등장은 제품구입처의 확대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만일 정제·원매회사와의 관계개선이 진행될 경우 조합조직으로서 판매업자의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 자립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특약점 계약조항의 재검토나 조직금융사업의 강화·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

그 다음 과제는 주유소의 집약화에 대한 노력이다. 단, 규제완화에 의해 신규참입이 활발히 행해지는 상황에서 주유소를 몇개 줄이면 1개 주유소당 판매량이 몇㎘ 늘게 된다는 숫자 맞추기식 집약화는 비현실적이다. 또 사업자의 의사를 무시한 「協業化」등 획일적 지도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조직의 검토방향으로서는 조합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배려하면서 각자의 결단에 의해 판매망의 정리통합·업태전환에 힘쓰는 주유소업자에 대해, 금융·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 확립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환경정비에 주력해야 한다.

### 특석법 (특정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이란

(공포) : 1985년 12월 20일

(시행) : 1986년 1월 6일

(취지) : 최근 석유제품 무역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에 대응하고,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사업에 관해 필요한 잠정조치를 정한다.

(본 법은 석유업법의 특례법)

(정의) : 특정 석유제품 이라함은 휘발유 등유, 및 경유를 말한다.

- 휘발유 : 원유를 정제하여 얻어지는 경질유분 중, 내연기관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탄화수소유
  - ① 휘발유 원제품
  - ② 휘발유 제조용 基材로서 수입되는 리포메이트
  - ③ 휘발유 제조용 基材로서 수입되는 FCC Gasoline
- ④ 상기의 것을 기초성분으로 구성되는 연료 기타 상기와 준한 것.

- 등유 : 원유를 정제하여 얻어지는 中質유분 중, 보다 경질인 성분으로서, 등화용 등 난방용, 주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탄화수소유

- 경유 : 원유를 정제하여 얻어지는 中質유분 중, 등유보다 中質인 성분으로서, 디젤기관의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탄화수소유

(등록)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통신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등록의 기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것.

- ①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량이 변동될 경우, 기타 석유제품의 생산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당해 특정 석유제품의 생산량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수율조정, 대체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 ② 특정 석유제품 또는 원유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

향후 여하한 신규수입주체의 등장이나 타업종의 신규참입이 있다고 해도 전후 50년에 걸친 석유산업의 역사를 근저에서 떠받쳐온 판매업자가 석유산업의 주역으로서 적극적으로 자기개혁을 추진하면 유류의 최종공급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월간석유, '95. 10월호〉

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저장능력, 재고완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 ③ 수입제품의 품질을 조정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품질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품질에 관한 권고) 통신장관은 특정 석유제품 수입업자가 수입한 특정 석유제품의 품질이 그 사용자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특정 석유제품 수입업자에 대해, 품질 확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석유 제품 생산계획 및 수입계획의 변경권고는 석유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정석유제품 수입업자의 노력) 특정 석유제품 수입업자는 국제 석유제품 시장동향에 따라, 특정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노력하기 않으면 안된다.

(보고징수 및 입회검사)

특정 석유제품 수입업자는 매월 20일까지 전월의 특정 석유제품 수입물량, 원산지를 그 종류별로 통신장관에게 보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벌칙) 각 위반 조문에 따라 50만엔 이하의 벌금, 10만엔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폐지) '96년 3월 31일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부칙 제2항)

(수출 주의사항) ('89년 12월 27일, 수출주의사항 元 제36호)  
수출의 승인 :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① 국내 석유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 명확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국내공급이 제약될 우려가 없을 것.
- ② 가격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적정한 수준일 것.
- ③ 거래 상대국(최종 목적지 포함)의 에너지 정책, 국제 에너지 무역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 에너지 무역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